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소득세 과세단위 연구 : 가족기업 중심으로

서정화*

<요약>

[연구목적] 현재 한국의 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에 의하며, 부부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에서의 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비단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불평등적인 세부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자영사업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은 남성 중심의 사회 전통으로 인하여 부부 공동 사업 소득의 배분시 성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그리고 전문연구서적 등에 의한 문헌적연구방법으로 연구한다. 특히 소득세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법원의 판결 등을 소재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기혼부부에 대한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연구의 시사점]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 또는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 중의 하나인 2분2승제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2분2승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혼부부의 결혼혜택 (marriage bonus)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의 상한선은 2분2승제도가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소득과세, 소득세 과세단위, 개인단위주의,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 2분 2승제

논문투고일 : 2024. 5. 31. 1차 수정일 : 2024. 6. 18. 게재확정일 : 2024. 6. 18.

* 협성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교수, (jhs5351@hanmail.net)

I. 서 론

그 동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이 현재보다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와 문헌들이 있으나 사실 여성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¹⁾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단위주의로 할 것인지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2차 소득자 한계세율이 달라지고, 또한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단위로 개인단위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혹은 부부나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주의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소득세 부담의 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합산과세의 가족의 범위에 부부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키는 경우인 현행 한국의 가족제도와는 생활실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수 조작에 따른 사회피의 만연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소득을 획득하는 사례는 아주 적기 때문에, 부부와 그 자녀들까지 합산과세대상으로하는 가족단위주의는 현실의 생활실태와는 크게 동떨어진 제도라고 하겠다. 따라서 소비단위주의 중에서 부부단위주의의 도입만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부단위주의 중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이미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는 개인단위주의에 대한 또다른 대안으로서 고려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인단위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는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의 도입만이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단위주의를 폐지하고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만을 채택할지 아니면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를 모두 채택하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이 조세법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부부단위합산비분할주의중 현재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2분2승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소득과세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사실 조세체계내에서 성불평등 요소는 명시적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암묵적인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여 그 식별이 어렵다. 따라서 열거된 성불평등 요소뿐 아니라 암묵적인 형태인 성 불평등 요소도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소득세이고, 주로 부부의 공유소득인 비근로소득, 또는 가족기업의 사업소득, 또는 각종 공제제도 등에서 나타난다. 즉, 가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과세단위의 변경, 성별차등세율의 도입,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구에 귀속되는 비근로소득이나 가족기업 사업소득을 모두 남편에게만 귀속하거나 또는 남편과 부인 소득에 대한 공제액에 차별이 있을 때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Stotsky(1996)는 1990년대 이전에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명시적이면서 암묵적인 성 불평등 요소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비근로소득은 대부분 남편에게 귀속시켰으며, 한편 1984년 조세개혁 이전의 네덜란드에서는 결혼 남성이 결혼 여성보다 더 높은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부부합산 신고제의 경우에도 영국은 1990년까지 남편의 이름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였으며, 프랑스도 1983년까지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그리고 전문연구서적 등에 의한 문헌적연구 방법으로 연구한다. 특히 소득세 개인단위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법원의 판결 등을 소재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Ⅱ.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일반론

1. 의의

소득세 과세단위(tax unit)는 소득을 합산하는 인적단위로 즉, 소득을 획득한 각 개인단위주의로 소득세를 계산할 것인가 또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단위주의로 소득세를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세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할 것인가 또는 부부나 가족등과 같은 소비단위로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소득세 부담액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밖에도, 과세단위는 과세 공평성·부부재산제·세무행정 등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²⁾. 이와 같은 소득세 과세단위는 과세표준 및 세율 등과 함께 소득세의 주요 과세요건³⁾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소득세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와 소비단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로 구분된다. 개인단위주의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경우이며, 이에 반해 소비단위주의란 부부 또는 가족과 같은 소비생활 공동체로의 집단을 과세단위로 하는 경우이다.⁴⁾

한편 소비단위주의는 소비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주의(marital unit)와 가족단위주의(family unit)로 구분된다. 또한 가족단위주의에 있어서도 부부만으로 과세단위를 설정하는 경우와 부모와 자녀 등 동거가족까지로 확대하여 과세단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2) 김완석, 2024,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p.60.

3) 과세요건에는 과세표준, 세율, 과세단위, 납세자, 과세대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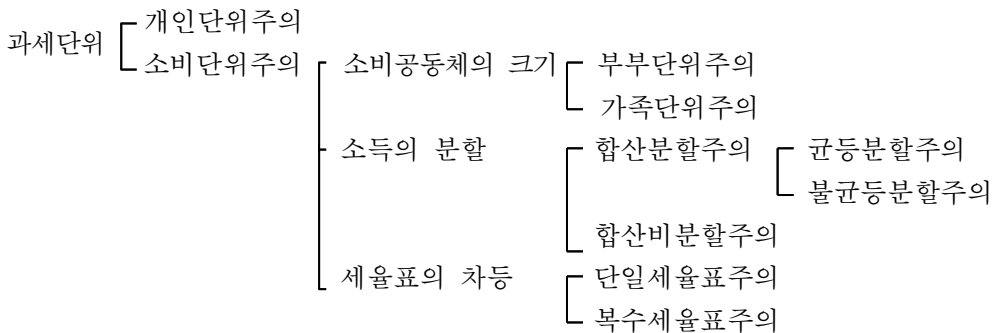
4) 서희열·노병석·서정우, 2024, 「소득세법」, 2020, 세학사, pp.52-53.

그리고 소비단위주의는 소득 분할에 따라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합산분할주의란 소비단위 구성원의 소득을 합계한 금액을 다시 구성원 인원수별로 분할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며, 이는 소득의 분할방법에 따라서 균등분할주의와 불균등분할주의로 세분된다. 이에 반해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비단위의 합계소득에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세율표는 소비단위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표를 적용하는 단일세율표주의와 소비단위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는 복수세율표주의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이 소비단위주의도 소비생활상의 세대의 크기나 소득의 분할 여부 및 분할방법 그리고 상이한 세율표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과세단위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⁵⁾.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소득세 과세단위의 유형



2. 개인단위주의

개인단위주의(individual unit system)는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가족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각각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개인단위주의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단위주의는 혼인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개인단위주의는 소득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의 크기가 결혼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자의 결혼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립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개인단위주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정보가 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부부간에는 개인단위주의가 더 바람직스럽다.

셋째, 개인단위주의는 소득을 합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세무행정이나 납세협력측면에서

5) 김완석, 전계서, p.66.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단위주의는 부부 또는 가족간 소득분산을 적출하기 위해 세무조사 및 확인 등에 많은 세무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3. 소비단위주의

소비단위주의(consumption unit system)는 소비생활상의 집단 즉, 부부 또는 가족을 과세단위로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소비단위주의는 또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첫째, 소비공동체의 크기에 따라 부부단위주의(marital unit)와 가족단위주의(family unit)로 구분한다. 그리고 가족단위주의도 부부와 그 자녀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부부 등을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소득의 분할여부에 따라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로 구분된다. 합산분할주의란 구성원의 소득을 합제한 금액을 다시 구성원별로 나누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시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균등분할주의와 불균등분할주의로 구분된다.

균등분할주의는 구성원별로 소득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법으로, 부부단위에 있어서의 균등분할주의를 2분2승제라고 부른다⁶⁾. 2분2승제는 부부의 합산소득을 2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적용 부부 1인당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부부 1인당 소득세액에 다시 2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불균등분할법에서의 분할계수는 대체적으로 2보다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따른 규모의 이익과, 한쪽별이부부에 부여되는 과도한 조세혜택의 제한 등의 이유로 분할계수는 2보다 적은 수, 예를 들면 1.5~1.9사이로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가족단위주의에서의 균등분할법을 N분N승제라고 부른다. 즉, 가족단위의 합산소득을 가족수(N)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가족 1인당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이 1인당 소득세액에 다시 가족수(N)를 곱하여 가족 전체 소득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합산비분할주의는 소득을 합제한 금액에다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셋째, 소비단위주의에서 적용하는 세율표는 소비단위 크기와는 무관하게 동일 세율표를 적용하는 단일세율표주의와,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는 복수세율표주의로 구분된다. 부부단위주의를 채택하면서 복수세율표주의를 선택하면 기혼 부부에게 적용할 과세구간(bracket)은 독신자에게 적용할 세율표상의 과세구간의 2배 이하로 결정된다. 이 때 기혼부부에게 적용할 과세구간이 독신자에게 적용할 세율표상의 과세구간의 2배인 경우에는 2분2승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 소득세 과세단위 결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소득세 과세단위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첫째, 과세의 공정성, 둘째, 결혼에 대한

6) 김완석, 전게서, p. 67.

가족기업연구 제3권 제1호

중립성, 셋째, 세무행정의 간편성, 넷째, 「민법」상 부부재산제와의 관계 등이 있다.

먼저, 어떤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담세력을 측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적합한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소비공동체의 기본단위는 부부나 가족이므로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보다는 그 소비공동체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계하여 소비단위로 과세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⁷⁾

사실 미국의 카터 리포트에서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기본적인 경제적·재무적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소득과세에 있어 소비단위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⁸⁾ 카터보고서의 주장은 아래 <표 1>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과세단위별 세부담 비교표

구분	소득발생자	발생소득계	개인단위주의 부담세액	소비단위주의 부담세액	소득세 적용세율
A부부	남편	8천만원	13,980,000		· 1천2백만원 이하:6%
	배우자	-	-		
	계	8천만원	13,980,000	13,980,000	
B부부	남편	4천만원	4,920,000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 1,080,000원)
	배우자	4천만원	4,920,000		
	계	8천만원	9,840,000	13,980,000	
C부부	남편	5천만원	6,780,000		· 4천6백만원초과 8천8 백만원 이하 :24% (누진공제액 : 5,220,000원)
	배우자	3천만원	3,420,000		
	계	8천만원	10,200,000	13,980,000	

주1) 신흠부부로 자녀는 없는 것으로 하고, 소득공제(예 :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등)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주2) 소득세 적용세율은 한국의 2020년 귀속 소득세 초과누진세율이다.

<표 1>은 A,B,C 세부부의 합산 소득금액이 다같이 8천만원이지만 남편만의 소득이 8천만원인 A부부,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4천만원씩인 B부부, 남편 5천만원과 배우자 3천만원인 C부부인 경우이다.

발생소득에 따라 개인단위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표 1>에서 보면 부담세액이 각각 A부부 13,980,000원, B부부 9,840,000원, C부부 10,200,000원으로 각 부부간에 소득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⁹⁾

7)金子宏, 1996, 『課稅單位及び讓渡所得の研究』, 有斐閣, p. 25.

8) Kenneth Lem. Carter et a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ume 3(Taxation of Income), 1966, p. 124.

9) Ibid., p. 118

그러나 부양가족의 유무와 가족수, 한쪽벌이부부와 맞벌이부부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면 세 부부는 모두 동일한 세액인 13,980,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동일한 세부담으로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을 과세의 공평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소비단위주의가 개인단위주의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소비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즉, 부부단위주의와 가족단위주의 그리고 소득의 분할여부에 따라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 및 세율표가 단일세율표주의인지 또는 복수세율표주의 등에 따라서 과세의 공평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소비단위주의는 근대적 개인주의 원리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에 대하여도 중립성을 잃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결혼의 중립성(marriage neutrality)이란 결혼한 부부 두 사람의 소득세 부담액이 결혼이 전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던 세액보다 많거나 적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이다.¹⁰⁾ <표 1>에서 보면 B, C부부는 결혼함으로써 B부부는 4,140,000원¹¹⁾, C부부는 3,780,000원¹²⁾의 소득세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합산비분할주의는 결혼징벌세(marriage penalty) 또는 결혼세(marriage tax)로 작용하며, 합산분할주의는 결혼 혜택(marriage gift or bonus)으로서 기능한다.¹³⁾ 이와 같이 소비단위주의를 채택할 경우는 결혼이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제가 결혼에 대해 촉진적(합산분할주의)이거나 억제적(합산비분할주의)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¹⁴⁾

한편 누진세율체계 아래에서는 ‘혼인중립적 세제의 원칙’과 소득이 같은 부부에게 같은 금액의 소득세 부담을 지우게 하는 ‘조세공평성의 원칙’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 즉 누진세율하에서, 소득이 같은 부부에 대해 같은 소득세 부담을 지우게 하는 혼인중립적 세제와 조세공평 실현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¹⁵⁾ 이를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고도 부른다.

이에 비해 개인단위주의는 결혼에 대하여 중립성을 갖는다. 즉, 부부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단위가 미래 결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결혼 교란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의 과세단위와 「헌법」 제36조 제1항 즉,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 규정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셋째,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세무행정 또는 세무집행의 간편성에서 보면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중 어떤 과세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세무행정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10) Ibid, p. 1395.

11) 13,980,000 - 9,840,000 = 4,140,000

12) 13,980,000 - 10,200,000 = 3,780,000

13) Boris I. Bittker, *Federal Taxation of Income, Estates and Gifts*, Volume 4, Warren, Gorham & Lamont, pp. 111~152.

14) 稅制調査會編, 稅制の抜本改革, 稅制調査會 第2・第3特別會中間報告, 稅務經理協會, 1986, p. 30.

15) Boris I. Bittker, op.cit., p. 1396.

먼저 소비단위주의는 과세단위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부부나 그 가족들에 대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 및 수집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초과부담인 징세비용(administrative costs) 이나 납세협력비용(compliance costs)¹⁶⁾인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근로소득을 연말정산¹⁷⁾ 방법에 의하여 종결하므로 개인단위주의에서 소비단위주의로의 전환은 세무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단위주의에서는 부부 및 가족간의 부당한 소득분산으로 인해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해 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¹⁸⁾ 구체적으로는 명의위장¹⁹⁾에 의한 자산소득²⁰⁾의 분산이나 가족 간의 거래를 통한 분산이나 가족을 사용인으로 등록시켜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소득분할이다.

이런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소득분산을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이후 납세자의 과세불복²¹⁾에 대해 엄청난 세무행정력과 행정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이처럼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바 이를 초과부담²²⁾이라 한다.

반면, 소비단위주의의 경우는 소득의 인위적 분산이 무의미하므로 이로 인한 과세관청의 비용부담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논점에서 보면 소비단위주의가 우월하다고 하겠다.

넷째,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민법」상의 부부재산제²³⁾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왜냐하면 부부 소득 귀속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결국 부부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중에 배우자가 번 소득에 대하여 누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소득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과세단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배우자가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공유재산제를 체결한 경우에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제 계약이 개인단위주의를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혼인중에 배우자가 번 소득이 어느 배우자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로 이는 「민법」상의 부부재산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16) 납세협력비용은 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장부의 기장, 과세표준 신고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17)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가 근로자의 최종 12월 급여지급시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이다.

18)金子宏, 앞의 책(1996), p. 36 : 田中治, 1998. 8, 『課税單位の見直しの論点と課題』, 税経通信, p. 26.

19) 명의위장이란 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타인 명의로 위장등록 하는 경우로, 이는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수단이다.

20) 자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불로소득을 말한다.

21)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22) 초과부담이란 정부가 징수한 세액을 초과한 납세자의 부담액을 말한다. 즉 납세자의 부담총액 > 정부의 징수세액의 산식이다.

23) 부부재산제란 혼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부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5. 2분2승제에 내용

2분2승제란 부부의 합산소득금액을 2로 나눈 다음, 그 금액에 단일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2를 곱한 세액을 부부의 소득세 산출세액으로 계산한다.²⁴⁾ 이때 부부에는 양쪽이 모두 소득을 얻는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어느 한쪽에서만 소득을 얻는 한쪽벌이 부부도 포함된다.

한편 복수세율표주의 아래에서도 기혼자의 세율표상 과세구간(bracket) 범위를 독신자의 2 배로 하는 경우에는 앞의 2분2승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복수세율표주의는 소득세제 자체를 복잡하게 하여 세무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부부단위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단일세율표 아래의 2분2승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2분2승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중에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부부가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중에서 한 유형을 선택 신고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분2승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현재 주요 국가중 2분2승제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은 개인단위주의나 2분2승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복수세율표 아래에서 공동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공동신고제나 분리신고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2분2승제는 소득세의 세부담면에서 개인단위주의보다 유리한 제도이다.²⁵⁾ 그러나 소득세의 세부담면에서 2분2승제가 개인단위주의보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나, 가정불화 등으로 2분2승제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2분2승제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단위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⁶⁾

그러나 선택적 2분2승제, 즉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의 선택적 도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선택적 2분2승제는 소득세 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즉, 많은 기혼부부들은 어떤 유형의 소득세 신고가 전략적으로 더 낮은 소득세 부담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의사결정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단위주의를 선택하는 기혼부부는 취득한 소득과 소득공제액을 남편과 배우자 각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2분2승제와 개인단위주의와의 선택제는 논리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4)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산출세액 = (합산한 부부의 소득금액을 2로 나누어 산정한 각자의 과세표준 X 소득세율) X 2

25) 맞벌이부부에 있어서 부부의 소득금액이 같은 때에는 개인단위주의에 의한 소득세와 2분2승제에 의한 소득세의 크기가 같게 된다.

26) Boris I. Bittker, op. cit., pp. 111~154.

2분2승제, 즉 부부의 공동신고(joint return)에서 부부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economic units)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계 없이 부부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이다.²⁷⁾ 그러나 만약 선택적 2분2승제를 선택한 두 쌍의 부부가 모두 공동신고를 한다면 동일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III.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와 시사점

1. 미국

미국은 1913년 이래 계속적으로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재산제도의 규율을 각 주마다 다르게 정하는 바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부부재산제도 역시 각 주마다 규율이 서로 다르다.

미국은 이 같은 각 주마다의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948년부터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혼인부부의 선택에 따라서 각자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또는 2분2승제에 따라 공동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단일세율표²⁸⁾하의 2분2승제는 독신자에 비해 기혼자 특히 혼자 버는 부부는 우대하고,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세대주에게는 상대적으로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지난 1969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하고 단일세율표제를 복수세율표제로 도입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세율은 납세자에 따라 세율표를 4가지, 즉 개인단위과세 선택 기혼자(Married individuals filing separate returns), 공동신고 선택 기혼자(Married individuals filing joint returns), 독신자(Unmarried individuals) 및 독신 세대주(Heads of households)의 세율로 나누고 있다.²⁹⁾

그러나 복수세율표문제로도 미혼독신자와 공동신고하는 기혼부부 간의 소득세 불공평문제를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공동신고하는 기혼 부부에 있어서도 결혼혜택(marriage bonus)을 누리는 자와 결혼징벌(marriage penalty)을 부담하는 자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소득세제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2. 영국

27) 이를 부부중립성의 원칙(couples neutrality)이라고 부른다(Richard Schmalbeck & Lawrence Zelenak, op. cit., p. 778).

28) 적용하는 세율표가 세대구성원에 따라 달리 차등 적용되지 않고, 단일세율표가 적용되는 것이다.

29) IRC §1.

소득세의 모국이라는 영국은 지난 1799년에 소득세를 도입한 이후로 부부단위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1972년부터는 처의 근로소득을 신청에 의하여 남편 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받게 되었다. 이어서 지난 1988년에 이루어진 세계개혁 (Finance Bill)에 따라 1990년 4월부터는 완전한 개인단위주의가 도입되었다³⁰⁾.

3. 프랑스

프랑스는 1945년부터 가족계수제(systeme du quotient familial)라는 소득분할방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적용하고 있다. 즉, 프랑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납세의무자의 가족상황 및 부양 가족수에 따른 가족계수에 따라 세대구성원에게 소득을 나누는 세대단위합산분할주의를 적용한다.

먼저 세대인 합산대상가족에는 부모와 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자녀나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자녀는 합산대상가족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21세 미만(학생은 25세 미만)인 자녀나 군 복무중인 자녀(연령과는 무관)는 합산대상가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한편, 부부는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하며, 자녀의 소득은 선택적으로 분리신고가 가능하다. 즉, 자녀의 경우는 합산이 강제되지 않으며 자녀가 분리신고한 경우에는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취급되며, 이 자녀는 가족분할계수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소득분할방식으로는 가족계수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가족계수제 적용은 독신·자·이혼자·홀아비 및 과부의 경우에는 1단위, 부부는 2단위, 부부 및 1명의 자녀는 2.5단위, 부부 및 2명의 자녀는 3단위, 부부 및 3명의 자녀³¹⁾는 4단위로 계산하고, 과세대상소득을 가족계수 수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 세액에 가족계수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소득세 산출세액} = [(\text{세대단위 합산소득}/\text{가족계수}) \times \text{세율}] \times \text{가족계수}$$

이 때 가족계수제는 자녀의 수가 많을 수록 세율의 누진도를 완화시킨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독신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계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부부소득은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며, 동시에 연대납세의무까지 진다.

이와 같은 가족계수제는 기혼자, 자녀있는 기혼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준다. 또한 자녀의 수가 많고 가족 중 남편 또는 아내만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감소정도가 크다.

30) Whitehouse, C. & Stuart-Buttle, E., 1992, *Revenue Law-Principle and Practice*, 10th ed., Butterworths, p.653.

31) 제1자녀 및 제2자녀는 각각 0.5단위로 하되, 제3자녀 부터는 각 1단위로 한다(Maria Teresa & Soler Roch, 1999, pp.40-41).

따라서 가족계수는 소득세의 누진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사실 프랑스의 가족계수 제도는 인구증가를 유인하기 위하여 채용된 제도이었으나 고액소득자에게 소득세의 경감혜택을 크게 준다는 점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4. 일본

한편 지난 1887년에 제정된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가족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채택하였다. 일본의 가족단위 합산비분할주의는 독일 「프로이센(Preußen) 소득세법」을 모델로 하여 도입한 것이었는데, 이는 그 당시 「민법」이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가족제도와 「소득세법」상 가족단위주의와는 상당히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1947년에 「민법」의 친족편이 전부 개정되어 종래의 가족제도가 폐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상의 가족단위주의는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95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였다³²⁾. 그런데 1957년 임시세계조사회는 자산소득을 세대과세단위로 합산과세하는 것이 자산의 명의위장 등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경감되므로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57년부터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개인단위주의의 특례로서 채택하였다. 즉, 개인단위주의가 원칙이나 다만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대단위로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1988년 세법개정 시에 세액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오늘까지 개인단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³³⁾.

5. 주요국의 과세단위 비교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과세단위를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국의 과세단위 비교

미 국	영 국	프랑스	일 본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자 • 부부합산 • 부부별산 • 특정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합산 • 가족분할계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신자 • 부부합산 • 부부별산

32) 吉良 實, 1981, “課稅單位に 關する 一考察”, 稅法學 論文集, 日本稅法學會, p.437.

33) 金子 宏, 2003, 租稅法, 第八版(增補版), 弘文堂, p.179.

IV. 여성소득에 대한 과세상 과세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득세 과세단위의 문제점

한국의 여성소득 과세상 과세단위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2분2승제의 도입 문제, 둘째, 2분2승제 선택시 연대납세의무의 부과 문제, 셋째, 가족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문제가 있다.

(1) 양성평등 규정 위반문제

현행 한국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각 거주자는 본인에게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³⁴⁾ 이처럼 개인단위주의가 원칙이었으나 다만, 자산소득인 즉,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를 적용했다³⁵⁾.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단위 합산비분할주의는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인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산소득과세에 있어서도 개인단위주의로 개정되었다.³⁶⁾

사실 개인단위주의는 가족 구성원의 2차적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적으며, 결혼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에는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주의는 재산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분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며, 또한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상속기여분제도와의도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의 실질과세원칙과 부부생활에도 맞지 않으며, 소득의 분산을 피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침해하고 세무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2) 연대납세의무의 이행 문제

2분2승제는 사실 부부가 번 소득금액을 각각 1/2씩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부부 각자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부부는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 「국세기본법」상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34)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35) 구 소득세법 제61조.

36)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바82.

(3) 사업·부동산 임대·산림소득의 소비단위별 합산과세 문제

현행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공동사업자)는 각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거주자별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즉, 가족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산림소득에 대하여는 소비단위별로 합산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동 규정은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가족의 공동사업까지도 가족조합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규정을 확대하고 있어서 다분히 위험적인 소지가 있다. 즉, 가족조합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규정을 해석할 때, 소득분산을 하여 초과누진세율 적용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까지도³⁸⁾ 공동사업으로 보도록 하는 동 규정은 「헌법」 제15조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 규정을 위반하는 위험 규정인 것이다.

2. 개선방안

(1) 2분2승제의 도입

여성소득과세상 과세단위의 개선방안은 먼저, 2분2승제의 도입이다. 즉, 개인단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요구된다. 이 때 합산대상이 되는 부부는 부부 모두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어느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된다. 소득세 과세단위에 2분2승제를 도입하여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실 2분2승제는 재산형성에 부부가 서로 기여한 공동 기여분을 배려하고 또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기여분제도와도 서로 부합한다. 즉, 부부의 소득은 혼자 번 소득이나 부부가 같이 번 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번 소득이므로 부부의 공유(共有)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³⁹⁾ 또한 2분2승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상속시 기여분제도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내용의 별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재산제는 크게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로

37)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38) 공동상속인이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등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실이 출자관계 및 소득의 실질적 귀속 등에 따라 명백한 경우 등이다.

39) 소득 등의 공동소유론 吉良 實, 1981, “所得課稅法上の課題”, 現代における法と行政, 法律文化社, pp.388-391.

구분된다. 특히 한국 「민법」은 계약재산제를 채택하고 부부의 재산문제를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계약이 없는 경우는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에 따르고 있다. 사실 부부 계약재산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부부의 재산계약을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⁴⁰⁾.

그리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하는 부부 계약재산제를 체결한 경우에 남편만이 소득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에만 전념한 경우 부부는 소득금액의 1/2에 대하여만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는 의견과 남편만이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는 견해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부부가 각각 1/2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는 견해는 부부별산제를 적용받는 부부와의 사이에 과세형평이 깨지게 되어 불합리하다.⁴¹⁾ 따라서 이런 경우에 2분2승제를 채택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될 수 있다.

셋째, 2분2승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소득⁴²⁾ 또는 근로소득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이 명의상으로는 남편 또는 처에게 귀속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쌍방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실질로는 부부가 공동사업을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아가 처는 오로지 가사에만 전념하고 남편은 사업을 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등을 얻는 경우도 이를 오직 남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처의 전업가사노동 덕분에 남편의 노동력이 재생산되었으므로 남편소득은 부부의 결과물로서 부부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소득의 실질이 이와 같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남편이 번 소득금액의 1/2 또는 일정 부분만큼은 처의 소득금액이며, 이에 따라 과세함이 마땅하다.

넷째, 2분2승제는 본래 개인단위주의보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맞는 제도이다. 즉, 부부는 생활공동체로 소득 및 소비생활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번 소득금액의 각각 1/2씩을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물론 개인단위주의는 부부 또는 가족간 소득분산에 의해 초과누진세율을 면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유인이 높다. 특히 명의 변경에 의한 자산소득의 분산, 가족조합을 위장한 소득의 분산, 사용인으로 가장한 가족에 대한 급여지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소득분산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납세의무자와는 과세상 불공평이 발생하여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을 투입하므로 제반 행정

40) 박동섭, 2004, 친족상속법, 박영사, p.115 ; 이강원, 2003, “부부재산계약”,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上)」, 재판자료 제101집, 법원도서관, pp.36-37.

41) 일본 하급심 법원에서는,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공유재산계약을 체결한 부부가, 변호사인 남편이 번 소득금액의 1/2을 전업주부인 처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남편만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東京地裁 昭和63年 5月 16日 判決, 判例時報1281號, p.87)

42) 농업을 포함한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2분2승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득의 인위적 분산이 무의미하게 된다.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부과

2분2승제 선택시에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2분2승제는 사실상 부부가 번 소득금액을 각각 1/2씩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부부 각자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특례제도 폐지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의 특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즉, 현행과 같은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규정 즉, 사실상의 합산과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존치할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사업합산과세시의 의제규정 즉,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한사람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는 동 규정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동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V. 결론

기혼부부에 대한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세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를 선택한다면 하더라도 부부단위합산분할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 때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단일세율표 아래에서의 균등분할주의, 즉 2분2승제이다. 이처럼 소득세 과세단위에 2분2승제를 도입하여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실 2분2승제는 재산형성에 부부가 서로 기여한 공동 기여분을 배려하면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기여분제도와의 서로 부합한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내용의 별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이 명의상으로는 남편 또는 처에게 귀속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부부 쌍방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실지로는 부부가 공동사업을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2분2승제는 본래 개인단위주의보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맞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부부는 생활공동체로서 소득 및 소비생활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번 소득금액의 각각

1/2씩을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여성소득과세상 과세단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개인단위주의와 2분2승제 중에서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2분2승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기혼부부의 결혼혜택(marriage bonus)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이 때 상한선은 2분2승제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로 해야 한다.

둘째, 2분2승제를 도입할 때에는 부부에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2분2승제는 사실 부부가 번 소득금액을 각각 1/2씩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부부 각자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가족간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특례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만일 소득을 분산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가족간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해서까지 합산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완석. 2023.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 김진영·박창균. 2001.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 박동섭. 2004. 「친족상속법」. 박영사.
- 서희열·노병석·서정우. 2020. 「소득세법」. 세학사.
- 서희열·김두복. 2020. 「상속세 및 증여세 이해」. CFO 아카데미.
- 이강원. 2003. “부부재산계약”. 재판자료 제101집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上). 법원도서관.
- 전병목. 2007. “소득세 과세단위에 대한 소고”. 「계간세무사」.
- 한도숙. 2000. 「북구국가들의 여성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稅制調査會編. 稅制の抜本改革. 1986. 稅制調査會 第2・第3特別會中間報告. 稅務經理協會.
- 吉良 實. 1981. “課稅單位に 關する 一考察”. 稅法學 論文集. 日本稅法學會.
- _____. 1981. “所得課稅法上の課題”. 現代における法と行政. 法律文化社.
- 金子宏. 1996. 『課稅單位及び讓渡所得の研究』. 有斐閣. pp.25.
- _____. 2003. 租稅法. 第八版(增補版). 弘文堂.
- 木村弘之亮. 1998. “總論：平等原則と配偶者課稅”. 家族と稅制. 弘文堂.
- 北野弘久. 1979. “內助の功と稅法”. 判例研究 日本稅法體系 2. 學陽書房.
- 山田美枝子. 1998. “家族の多樣化と フランス 個人所得稅”. 家族と稅制. 弘文堂.
- Boris I. Bittker. 1975. “Federal Income Taxation and the Family”, 27 Stanford L. Review.
- Kenneth Lem. 1966. “Carter et a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Vol.3(Taxation of Income).
- McNulty, J. K.. 1988.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est Publishing Co.
- Meade, J. E.. 1978. *The Structure and Reform of Indirect Taxation*. George Allen & Unwin.
- Richard Schmalbeck & Lawrence Zelenak. 2004. *Federal Income Taxation*. Aspen Publishers.
- Stephan Cretney. 1997. *Principle of Family*. Law, Sweet & Maxwell.
- Whitehouse, C. & Stuart-Buttle, E.. 1992. *Revenue Law-Principle and Practice*. 10th edition, Butterworths.

A Study on the Taxable Unit of Income Tax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Jung hwa Suh*

— <Abstract> —

[Purpose] Currently, the income tax unit in Korea is based on individual unitism, and the consumption unitism, which is taxed on the sum of income from joint projects between specially related persons such as couples, is applied to the main joint business operator. Gender inequality tax burden problems may arise.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businesse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n imbalance may occur depending on gender when distributing joint business income between couples due to the male-centered social tradition.

[Design/Methodology] This study studies with literature research methods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prior papers, research reports, and specialized research books. In particular, in grasping the problems of income tax individual unitism, we intend to study the subject of court rulings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Find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taxable unit for married couples by a method of arbitrarily choosing between individual unitism and marital unit combined divisionism.

[Research implication] For the taxable unit of income tax, the taxpayer should choose the two-minute and two-minute system, either individual unitism or combined divisionism, but in applying the two-minute and two-minute system, an upper limit on the marriage bonus of married couples should be set. The upper limit in this case should be set to the extent that the two-minute and two-win system is not excessively damaged.

<Key Words> Women's Income Taxation, Income Taxation Unit, Individual Unit system, The principle of Aggregation-Division of Marriage Couple Unit, Bisectonal spilt-income System

* Assistant Professor, Hyupsung University, First Author(jhs5351@hanmail.net)